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8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2. 19.
3. 회 부 일 : 2025. 0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예산) ① (생략)	제35조(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 -- <u>공무원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u> 에게-----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사무

1) 현재 강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조례에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 되어 있음.

예시) < ○○시·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 >

- 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시·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담당·수행 인력은 총 21,284명이며, 이 중 경찰관을 제외한 공무원·공무직은 1,338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음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인력 현황>

('25. 2월 기준,)

구분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현원)			
	총합	경찰관	행정관	공무직
서울	3,972명	3,804명	104명	64명
부산	1,604명	1,496명	66명	42명
대구	1,045명	951명	58명	36명
인천	1,200명	1,133명	42명	25명
광주	583명	527명	28명	28명
대전	618명	579명	13명	26명
울산	661명	614명	29명	18명
세종	144명	134명	5명	5명
경기남부	2,817명	2,667명	107명	43명
경기북부	1,075명	1,028명	29명	18명
강원	801명	739명	37명	25명
충북	732명	671명	35명	26명
충남	988명	924명	23명	41명
전북	1,335명	1,263명	31명	41명
전남	966명	906명	27명	33명
경북	1,223명	1,121명	56명	46명
경남	1,190명	1,084명	77명	29명
제주	330명	305명	11명	14명
총합	21,284명	19,946명	778명	560명

※ 자료 : 경찰청

현행법상 이들 공무직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적인 재정적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시도 조례에 근거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 형

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른 지급현황을 보면, 강원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자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에도 후생복지(복지포인트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시·도별로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동일 수준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²⁾

<'25년 각 시·도별 재정지원 현황>

(‘25. 2월 기준, 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인당	50	45	48 (20)	70	24	50	40	50	100 (50)	60	50	50	50 (25)	60	50 (25)	30	60
공무직	○	○	○	○	○	○	○	○	○	○	○	○	○	○	○	×	○

※ 주 1 : 표의 괄호는 경찰공무원과 공무원·공무직 지급액이 다른 경우 공무원·공무직 단가

2 : 경남 지역은 '25년 하반기부터 지급 예정

3 : 복지포인트로 지급함

※ 자료 : 경찰청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바,

2) 법안의 발의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이외의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지자체 운영 현황을 보면, 경찰관과 공무원·공무직으로 나누어 지급을 하는 상황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지급 차이는 없음.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더불어 직원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향후 조례나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무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공무원 등의 복지 향상과 업무 의욕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